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2022. 10. 21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3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간접지원 정보제공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관명칭 변경(안 제9조)
 -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 →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(안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2조,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기존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에서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3조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정비함.
 - 제5조제2항 중 “소요재원”을 “지원에 필요한 재원의”로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정비함.
 - 제7조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정비함.

-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고기간 내”를 “신고 기간”으로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정비함.
- 제9조제2호 중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을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으로 변경함.
- 제12조 중 “소요예산”을 “필요한 예산”으로 정비함.
- 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정비함.
-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아니한” 을 “않은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소요재원” 을 “지원에 필요한 재원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소요되는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아니한다” 를 “않는다” 로 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고기간 내” 를 “신고 기간” 으로,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 을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 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소요예산” 을 “필요한 예산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사회 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<u>아니한</u>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않</u> <u>은</u> -----.</p>
<p>제5조(지원기준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<u>소요재원</u>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, 시·군비 50퍼센트로 한다.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<u>소요되는</u> 통상적 비용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지원에 필요한</u> <u>재원의</u>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	<p>제7조(중복지원 금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는다</u>.</p>
<p>제8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·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</p>	<p>제8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/p>

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제9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)

시장·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

3. ~ 8. (생략)

제12조(재원의 확보) 도지사 및

시장·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그 밖의 주요사항) 이 조

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

신고 기간

사람은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재원의 확보) 필요한 예산

제13조(그 밖의 주요사항)

의 지급,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
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대
책본부장이 정한다.

필요한 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8조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)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.

<개정 2018. 12. 31.>

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,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, 지부 또는 지소,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⑥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⑧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[제목개정 2018. 12. 31.]